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혈액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 이유

혈액관리법 제4조의7 및 제4조의8 개정(개정 '21.12.21, 시행 '23.6.22.)에 따라 헌혈자 예우와 원료혈장 가격·배분 등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제2조의4(원료혈장 수급계획) 신설

-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관리와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 계획 수립, 헌혈권장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가능
- 수급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해 혈액원, 제약사에게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
-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, 자료, 내용 등은 고시로 규정

나. 제3조의2(헌혈자에 대한 예우) 신설

-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, 헌혈 장려를 위한 교육·홍보, 헌혈 유공자 유공자증 발급 및 초청행사,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증진 활동 등

다. 제5조의2(소위원회) 개정

- 소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으로 변경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4(원료혈장 수급계획)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4조의7에 따라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혈액원과 혈장분획제제를 제조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(이하 ‘수급계획’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은 제2조의3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수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료혈장을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아 혈장분획제제를 제조하는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원료혈장 가격 및 배분 결정 절차, 요청 자료나 정보 범위, 원료혈장 가격 및 배분 산정 내용,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헌혈자에 대한 예우) ①법 제4조의8제3항에 따라 국가는 헌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

2. 헌혈 장려를 위한 교육·홍보

3. 헌혈유공자에 대한 유공자증 발급, 초청행사 등

4. 그 밖에 헌혈 기부 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한 활동

제5조의2제2항제2호의 부분 중 “7인”을 “10인”으로 한다.

②소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제2조의4(원료혈장 수급계획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7에 따라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혈액원과 혈장분획제제를 제조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(이하 ‘수급계획’)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은 제2조의3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.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수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료혈장을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아 혈장분획제제를 제조하는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원료혈장 가격 및 배분 결정 절차, 요청 자료나 정보 범위, 원료혈장 가격 및 배분 산정내용,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신설>	제3조의2(헌혈자에 대한 예우) ①법 제4조의8제3항에 따라 국가는 헌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소위원회)①(생략) ②소위원회는 <u>7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	1.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2. 헌혈 장려를 위한 교육·홍보 3. 헌혈유공자에 대한 유공자증 발급, 초청행사 등 4. 그 밖에 헌혈 기부 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제5조의2(소위원회)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10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633